

BANANA TABLE

정보공개서

바나나립(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6026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03.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7.22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 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 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바나나립(주)

대표번호 Tel : 031-212-0009 Fax : 031-205-0014

가맹사업부: Tel : 1800-8580

bananaleaf@bananaleaf.co.kr bananaleaf.co.kr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15.04.30	2015.04.30	바나나립(주) 사업자등록번호 624-87-00054 법인등록번호 135811-0269100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바나나립(주)	바나나테이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 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특수관계인 (임원)	배정완(대표이사) 조희정(감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배정완	031-212-0009	031-205-001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바나나테이블	정통 타이레스토랑
상 호	바나나테이블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BANANA TABLE	-
영업표지	BANANA TABLE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단 위 : 천 원)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1	1,665,323	1,291,920	373,402	921,318	11,717	8,653
2022	1,754,580	1,373,654	380,925	915,574	10,344	7,522
2023	2,239,233	1,856,465	382,768	820,365	15,101	1,842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단 위:천 원)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배정완	2015.04~현재	바나나립(주)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조희정	2015.04~현재	바나나립(주) 감사	경영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①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말 기준	2	0	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바나나테이블]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음으로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 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ANANA TABLE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16.1.8 2016.7.6	제 41-2016-0001138 호 제 41-0364927 호	바나나립 주식회사 (배정완)	2026.7.6

II. 가맹본부의 [바나나테이블]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2016 년 11 월 23 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5 년 07 월 06 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바나나테이블	바나나테이블	배정완	2016.07~현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 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3. [바나나테이블] 업 종

영업표지	업 종	
바나나테이블	대 분 류	소분류(주요상품)
	기 타 외 국 식	볶음면(팟타이꿍)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바나나테이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3	1	2	3	2	1	3	2	1
서울			-			-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3	1	2	2	1	1	2	1	1
강원	-	-	-	-	-	-			
충북	-	-	-	-	-	-			
충남	-	-	-	1	1	-	1	1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5. 바로 전 3년간 [바나나테이블]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	1	-	-	1
2022	1	1	-	-	-	2
2023	2					2

6. [바나나테이블]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바나나테이블] 외에 다른 가맹 사업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나나테이블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 수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 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 한)		
		연간 평균 매 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	395,453	10,156	449,624	12,902	341,282	7,931	2 개점 대 상
서울	0	해당없음						5 곳 미만
대구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인천	0	해당없음						5 곳 미만
광주	0	해당없음						5 곳 미만
대전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울산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세종	0	해당없음						5 곳 미만
경기	0	해당없음						5 곳 미만
강원	1	해당없음						5 곳 미만
충북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충남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5 곳 미만
전남	0	해당없음						5 곳 미만
경북	0	해당없음						5 곳 미만
경남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제주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산정기준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포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6 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 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3 항/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바나나립(주)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5 곳 미만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연간 평균 매출액 자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 [바나나테이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나나테이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2개	1,570일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9. 가맹지역본부 (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 년]에 [바나나테이블]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소계		3,554	3,554		
	라디오					
		(비공개)	3,554	 (비공개)		(비공개)
판촉	소계					
	행사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전략상품부	서울 중구 을지로 79	02-729-7579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	-----

기업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ibk.co.kr) 접속 → ② (기업)클릭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클릭 → ⑥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⑦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⑧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 ⑨ 가맹금예치 완료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기업은행 계좌 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예치 인터넷뱅킹 이용시 기업은행 사정으로 컴퓨터 화면에 이용순서가 상이할 수 있으니, 인터넷뱅킹 이용시 문의사항은 기업은행 또는 가맹본부(본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기업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바나나테이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1,100 만원	계약 체결 시 (또는 영업개시 일)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 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교육비	330 만원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반환조건: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와 교육비는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맹비, 교육비는 부가세 포함금액 입니다.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금액보다 금액이 많을 시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500 만원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부가세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가맹비	1,100만원	1,100만원
교육비	330만원	330만원
보증금	500만원 (부가세없음)	-
합 계	1,930만원	1,430만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40 평 기준)(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132 m ² 기준(약 40 평)	평당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127,600	3,190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인테리어	협력업체	78,400	1,960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 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	협력업체	4,000	-		
가구	협력업체	1,200	-		
주방가구	협력업체	26,000	-		
주방기기	협력업체	8,000	-		
포스	협력업체	2,000	-		
초도물품	가맹본부	8,000	-		

별도금액 (추가공사)	협력업체	-	-		
----------------	-------------	---	---	--	--

*협력업체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당사에 제작, 설치 의뢰 시 예상금액이며 귀하의 매장의 설치환경, 조건, 오픈 시기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m²당 (22만원, VAT포함)의 설계 및 디자인, 노하우 제공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최소 점포 기준 80 m²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점포규모: 132 m²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도-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포스	협력업체	포스업체와 별도 협의	포스업체와 별도 협의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5.5% (부가세포함)	익월 5일	브랜드 사용료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포스금액은 가맹점 오픈시기나 대리점 업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 (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 이라 한다) 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간판, 설비, 집기 등에 부착된 영업표지의 변경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분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1,000 만원, VAT 별도), 교육비(300 만원, VAT 별도) 를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000 만원, VAT 별도), 교육비(300 만원, VAT 별도), 보증금(5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바나나테이블”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당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 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바나나테이블]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첨 1 상세품목 기재]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 2 상세품목 기재]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계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바나나테이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해당없음

계		
---	--	--

- 2) 당사가 [바나나테이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해당없음

계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개점 전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바나나테이블 판매 메뉴	바나나테이블 메뉴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으로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메뉴명	권장가격(원)	메뉴명	권장가격(원)
-----	---------	-----	---------

별지참조

수정 시 당사의 교육직원이 귀하의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가목)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 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바나나립(주) Tel 1800-8580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타이레스토랑	바나나테이블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재조정 사유발생 ② 당사 담당팀 검토 ③ 영업지역 변경(안)작성 ④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 ⑤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바나나테이블’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은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하시되,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47.8%	52.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① [바나나테이블]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입니다.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 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바나나립(주) Tel 1800-8580

-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물품대금, 로열티,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④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⑤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이 된 경우
-
- ⑥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⑦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실제 운영자를 기준으로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 초과한 경우
-
- ⑧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⑨ 새로운 메뉴, 상품, 제품의 조리 홍보,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거부하거나 조리에 필요한 집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5-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인/허가 취득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④ 메뉴판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상품공급의 중단
⑪ 로열티의 납입
⑫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제 9 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제 18 조제 2 항 가맹점주의 요건 변동 시 가맹본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9.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재료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해지 사유
①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 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 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 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하며, 귀하는 당사의 거절에 이의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바에 따라 귀하의 통지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 당사는 당사의 가맹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즉각 착수 할 것이며, 귀하께서는 물품공급중단,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합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타이레스토랑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바나나테이블]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2:00 (계약체결 시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营业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营业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점주 자율	직접 근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에게 운영매뉴얼 및 영업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감독 결과 당사로부터 가맹점포 관리 소홀로 인한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귀하께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빈도 및 시기	담당팀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1회/ 1분기	본사 운영팀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1회/ 1분기	본사 운영팀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1회/ 1분기	본사 운영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바나나테이블]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광고	50%	50% (전체 가맹점 에 안분)	광고/판촉 진행 시 별도 협의
판촉	브랜드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전국 및 지역별 판촉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당사로부터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	----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 13 조 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반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자에게 제 14 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미만 시 2개월분, 1년이상 ~2년미만 시 4개월분, 2년이상 시 6개월분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로열티 및 물류마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40~47일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7일~14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입지선정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가맹계약체결	2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공사 착수	공사 실시	25일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20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등
- 기타 개점절차에 영향을 주는 사유발생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 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 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의 일부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부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 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바나나테이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주류 대출	선진주류 (지역에 따라 상 이)	1,000~3,000 만원 (점포입지에 따라 상이)	10~20 개 월 분할상환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조건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조기 안정 화 자금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 출액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12%이하인 경우	가맹점개업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바나나테이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20일 (점주 협의 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개점 전 조리/ 서비스 교육			330만원 (VAT포함)	필수 교육
신메뉴 교육 (개점 후)	메뉴 조리방법	집체교육 or 개별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교육비 및 실비	신메뉴 개발 시, 필수교육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 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 비 및 최소시간 공지)	교육비 및 실비	필수 교육

*신메뉴 개발 시 귀하가 별도의 추가교육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교육비 (22만원, VAT포함) 및 실비를 청구합니다.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광고점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광고아브뉴프랑 1층

[광고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년 8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64,29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별도)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호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가맹본부 바나나립(주) (인)

-----참-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호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 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가맹본부 바나나립(주) (인)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합니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호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2022년 07월 20일

가맹본부 바나나립(주) (인)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점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33-5	031-8015-3763
2	천안아산점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57	0507-1442-2210
3			
4			
5			
6			
7			
8			
9			
10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201 년 월 일

가맹본부 바나나립(주) (인)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	---	----	------

신청인의 계좌	
---------	--

가맹본부의 계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판매하는 메뉴 및 판매가격 >



패밀리세트
~~103,000~~ **99,000**
 (솜담, 무사태, 카오팻무, 맛타이, 푸팟퐁커리, 바나나튀김)

프렌즈세트
~~51,000~~ **49,000**
 (레몬치킨, 나시고랭, 맛타이꿍)

상기 이미지와 조리된 음식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 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바나나립(주) Tel 1800-85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 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바나나립(주) Tel 1800-85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314 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바나나립(주) Tel 1800-8580